

# 어선등록업무의 내용과 절차

수산청시설국 어선과

행정사무관 田 炳 夏

## 1. 서 문

대망의 어선법이 77. 12. 31 법률 제 3063호로 제정 공포되어 79. 1. 1 부터 시행하게 되어 해운항만청에서 관장하던 어선의 등록 및 검사등에 관한 어선행정을 수산청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종래 각 지방해운항만청에서 취급하던 등록업무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연안 각시군(수산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선박법에서는 전동력선과 5톤이상 무동력선을 등록대상으로 하였으나 어선법상의 등록대상은 전동력어선은 물론 무동력어선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1톤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적량측정업무를 어선협회 또는 선적항의 시군에서 취급토록 하는등 종전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어선소유자가 등록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알기 위하여는 어선법과 동 시행규칙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된 관련조항을 일견 이해키 곤란할 것이므로 등록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규조항을 중심으로 등록내용은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것인지 이하에서 풀이 하고자 한다.

## 2. 등록대상어선과 선적항의 설정

### 가. 등록대상어선

어선법은 총톤수 1톤이상 무동력어선과 1톤미만을 포함한 전 동력어선을 등록대상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어선으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어선의 소유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및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국적증서를, 20톤미만의 전 동력어선과 5톤이상 20톤미만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선적증서를, 1톤이상 5톤미만 무동력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등록필증을 교부하며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교부 받은후 그 등록번호를 당해어선에 표시 하여야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수 있다.

등록번호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어선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수산청고시 제14호로 어선표지판 규격및 부착요령을 별도로 제정 고시 한바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서 설명을 약하기로 한다.

### 나. 선적항의 설정

선적항은 어선의 주된 출입항으로서 어획물의 양육과 조업및 항행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근거지 이므로 어선이 항행할수 있는 해면에 접한 시, 읍, 면을 선적항으로 하되 선적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어선소유자의 주소지로 하여야 하나 어선의 소유자가 해면 이외의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그 어선의 어업근거지에 선적항을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 3. 어선의 등록절차

어선등록을 유형별로 보면 신규등록과 변경등

록 및 말소등록으로 대분할수 있는데 신규등록이라 함은 어선을 새로이 건조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을 때의 최초의 등록으로 어선등록을 신청하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교부 받으며 변경등록이라 함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의 변경등록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이미 교부받은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개서 받으며 말소등록이라 함은 등록의 취소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의 등록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의 3가지 유형에 따라 등록절차를 설명 하고자 한다.

### 가. 신규등록

신규등록을 함에 있어 그 등록절차는 어선의 규모 즉

①선박국적증서 교부대상어선(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 및 무동력어선)과

②선적증서 교부대상어선(총톤수 20톤 미만의 전 동력어선과 5톤이상 20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③어선등록필증 교부대상어선(총톤수 1톤이상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으로 구분 되는데 이에 따라 각각 등록절차와 등록시의 첨부서류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씩 달리 한다.

#### (1) 선박국적증서 교부대상어선의 등록절차

선박국적증서 교부대상어선인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 및 무동력 어선은 건조시에는 조선공업진흥법을, 선박등기시에는 선박등기법을 각각 적용 받아야 됨으로 이 절차를 거쳐서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시장, 군수)의 어선건조발주허가와 상공부장관의 선박건조승인을 득하여 어선을 건조한 후 먼저 한국어선협회에 적량측정을 신청하고 적량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50톤이상은 어선협회 본부 50톤미만은 어선협회지부)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선박등기를 한후 어선소유자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어선의 등록을 하면 되는데 적량측정 신청시 한국어선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어선적량측정신청서 ②어선건조발주허가서류 3부 ③선박설계서 3부 이

며 어선등록시는 시장, 군수에게 ①어선등록신청서 ②어선등기부등본 ③신조증명서(기관거치증명포함) ④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취득시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적량측정신청 및 가선박국적증서 교부신청을 하여 적량측정증명서와 가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후 선적항에 회항하여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한다.

단, 국적취득후 용선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을 하며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선박국적증서 대신에 어선등록필증을 교부한다.

#### (2) 선적증서 교부대상어선의 등록절차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은 조선공업진흥법상의 건조승인이나 선박등기법상의 등기대상어선이 아니므로 본 선적증서 교부대상어선과 다음에 설명할 어선등록필증 교부대상어선은 등록절차나 등록시의 첨부서류등이 비교적 선박국적증서 교부대상어선에 비하여 간소하다.

선적증서 교부대상어선은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시장, 군수)의 건조발주허가를 득하여 어선을 건조한후 한국어선협회에서 적량측정을 받아 곧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등록을 하면 되며 적량측정시 한국어선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어선적량측정신청서 ②어선건조발주허가서류 3부 ③건경사진 3매 이며 어선등록시는 시장, 군수에게 ①어선등록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신조증명서(기관거치증명포함) 또는 소속수협장과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 (3) 어선등록필증 교부대상어선의 등록절차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득하여 어선을 건조한 후 시장,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는 먼저 적량측정을 실시하고 어선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이때에는 별도 적량측정 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어선등록신청시에 ①어선등록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신조증명서 또는 소속수협장과 어촌계장의 확인서만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적취득부 용선의 경우에는 어선의 규모에 관계없이 등록을 신청하

면 어선등록필증을 교부한다.

## 나. 변경등록

등록내용의 변경사항은 이를 대분하면

○선적항의 변경

○어선명칭의 변경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

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이에따라 등록신청 및 그 절차에 있어서 조금씩 내용을 달리한다.

### (1) 선적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매매로 인한 선적항 변경의 경우는 매수자)가 어선의 선적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으로서 명의이전등 등기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변경을 한후) 그 어선의 기존등록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며 당해 등록청의 시장, 군수는 선적항의 변경등록을 하고 어선원부와 그 부속서류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변경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이송하며 그 사실을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와 한국어선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선적항 변경등록신청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①변경등록신청서 ②어선등기부등본 ③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2) 어선명칭의 변경

어선의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선명변경승인 신청을 하며 당해 시장, 군수는 ①전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어선을 취득한 때 ②어선의 명칭앞에 번호를 붙이거나 붙인 번호를 변경 또는 제거 하고자 할 때 등에 한하여 변경 승인 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한 경우 어선원부에 신선명으로 변경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개서 교부한다.

어선명칭변경승인 신청시는 선명변경신청서만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다.

### (3)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등록사항중 선종, 선질, 총톤수, 총적량, 선박의 치수, 기관의 종류와 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시장, 군수)의 어선개조발주허가를 받아(총톤수 20톤이상 어선의 경우는 어선개조발주허가 외에 상공부

장관의 개조승인을 득하여) 개조를 한후 한국어선협회에 적량개측신청을 한다.

적량개측을 받은 후에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면 관할 시장, 군수는 당해 변경사항에 대하여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개서 교부한다.(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은 변경등기를 한후 변경등록신청)

적량개측신청시 한국어선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①적량개측신청서 ②어선개조발주허가서류 3부 ③전경사진 3매(총톤수 20톤미만) 또는 선박 설계서 3부(총톤수 20톤이상)이며 변경등록신청시는 시장, 군수에게 ①변경등록신청서 ②어선 등기부등본 ③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한다.

## 다. 말소등록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등록을 한 어선이 ①용도가 변경되어 어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때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될때 ③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멸실, 침몰, 해체, 또는 노후, 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인정되는때 ④6월이상 행방불명이 될때 ⑤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어선의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 될때(다만, 상속인 또는 해산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사망일 또는 해산일로 부터 30일내에 재등록을 한때는 예외)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어선의 소유자는 2주일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어선말소등록신청을 하고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등록필증)를 반납하여야 한다.

관할 시장, 군수는 등록이 취소된 어선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30일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 하고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며 신청에 의해서나 직권에 의해서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와 한국어선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